

제 2 장

신규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INCENTIVES





## 1. 제조 부문에 대한 인센티브

- 1.1 제조회사에 대한 주요 인센티브
- 1.2 하이테크 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 1.3 전략 프로젝트에 대한 인센티브
- 1.4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 1.5 선정된 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 1.5.1 기계류 및 장비
  - 1.5.2 특수 기계류 및 장비
- 1.6 자동차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 1.7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 1.8 부가 가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오일 팜 바이오 매스의 활용에 대한 인센티브
- 1.9 산업화 건물 시스템(IBS)에 대한 인센티브
- 1.10 말레이시아인 소유 회사에 대한 1986년 투자촉진법에 따른 세제 인센티브 취득을 희망함의 정의
- 1.11 제조 부문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 2. 농업 부문에 대한 인센티브

- 2.1 농업 부문에 대한 주요 인센티브
- 2.2 식품 생산
- 2.3 할랄(Halal) 제품에 대한 인센티브
- 2.4 농업 부문에 대한 인센티브

## 3. 생명공학기술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 3.1 생명공학기술산업에 대한 주요 인센티브
- 3.2 바이오넥서스 자격(BioNexus Status) 회사에 대한 생명공학기술 자금 조달

## 4. 환경 관리에 대한 인센티브

- 4.1 조림 프로젝트에 대한 인센티브
- 4.2 폐기물 재생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 4.3 녹색 기술에 대한 인센티브
- 4.4 폐기물 에코 파크(Waste Eco Park, Wep)에 대한 인센티브
- 4.5 가속 자본 공제(ACA)

## 5. 연구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 5.1 연구 개발에 대한 주요 인센티브
- 5.2 연구개발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 6. 훈련에 대한 인센티브

- 6.1 훈련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 7. 승인된 서비스 프로젝트(ASP)에 대한 인센티브

- 7.1 ASP에 대한 주요 인센티브
- 7.2 ASP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 8. 해운 및 운송 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 8.1 말레이시아 선박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 9. 정보 통신 기술(ICT)에 대한 인센티브

- 9.1 정보 통신 기술(ICT) 장비의 사용 구매에 대한 인센티브

## 10. 저개발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 11. 기타 인센티브

- 11.1 산업용 건물 공제
- 11.2 말레이시아 MSC(멀티미디어 수퍼 코리도, Multimedia Super Corridor) 건물에 대한 산업용 건물 공제
- 11.3 감사 수수료 공제
- 11.4 엔젤 투자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 11.5 철거 및 폐기 자산 비용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 11.6 재산권 취득에 대한 인센티브
- 11.7 관세 관련 인센티브
- 11.8 환경 보호를 위한 기부
- 11.9 직원의 숙박에 대한 인센티브



# 신규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말레이시아에서는 1986년 투자촉진법(Promotion of Investments Act), 1967년 소득세법(Income Tax Act), 1967년 관세법(Customs Act), 1976년 국내소비세법(Excise Act) 및 1990년 자유지역법(Free Zone Act) 등에 직접 및 간접 세제 인센티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들 법은 제조, 농업, (호텔을 포함한) 여행 및 승인된 서비스 부문은 물론 R&D, 훈련 및 환경 보호 활동 등에서의 투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접 세제 인센티브는 특정 기간 동안 소득세 납부에서 부분 또는 전체를 공제해 주는 한편, 간접 세제 인센티브는 수입 관세 및 국내소비세를 면제해 주는 형태로 제공됩니다.

## 1. 제조 부문에 대한 인센티브

### 1.1 제조회사에 대한 주요 인센티브

제조 부문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주요 세제 인센티브는 개척자 자격(Pioneer Status) 및 투자세 공제(Investment Tax Allowance)로 제공됩니다.

개척자 자격(Pioneer Status) 및 투자세 공제(Investment Tax Allowance) 자격은 부가가치, 이용된 기술 및 산업계 연계 등의 수준을 비롯, 특정 우선순위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유자격 활동 및 제품은 "장려 활동" 또는 "장려 제품"으로 지정됩니다. (부록 I: 장려 활동 및 제품 목록 - 일반을 참조할 것)

기업은 운영/생산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진흥청(MIDA)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i) 개척자 자격(Pioneer Status)

개척자 자격(PS)을 취득한 회사는 소득세를 5년 간 일부 면제받습니다. 개척자 자격(PS)을 취득한 회사는 법정 소득의 30%\*를 세금으로 납부하며, 세금 면제 기간은 생산일(생산 수준이 생산 능력의 30%에 도달하는 날로 정의됨)로부터 시작됩니다.

개척자 기간 동안 발생한 미처리 자본 공제는 이월되어 회사의 개척자 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척자 기간 동안 발생한 누적 손실은 이월되어 회사의 개척자 후 소득에서 7년간 연속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정 소득은 총 소득에서 수입 지출과 자본 공제를 공제한 후에 얻어집니다.

개척자 자격 신청서는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ii) 투자세 공제(Investment Tax Allowance)

개척자 자격의 대안으로 회사는 투자세 공제(IT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투자세 공제(ITA)를 받는 회사는 최초의 적격 자본 지출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발생한 적격 자본 지출(승인된 프로젝트에 사용된 공장, 플랜트, 기계류 또는 기타 장비)에 대해 60% 투자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회사는 매년 평가받는 법정 소득의 70%에 대해 이러한 투자세 공제액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투자세 공제액은 전액을 사용할 때까지 차기 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법정 소득의 나머지 30%는 현행 법인세율의 적용을 받아 과세됩니다.

투자세 공제 신청서는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2 하이테크 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하이테크 회사는 신형 기술 분야에서 장려 활동 또는 장려 제품 생산에 종사하는 회사입니다(부록 II: 장려 활동 및 제품 목록 - 하이테크 회사 참조). 하이테크 회사는 다음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 i. 5년 동안 법정 소득의 100%에 대해 소득세 면제가 주어지는 개척자 자격 개척자 기간 동안 발생한 미처리 자본 공제는 이월되어 회사의 개척자 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척자 기간 동안 발생한 누적 손실은 이월되어 회사의 개척자 후 소득에서 7년간 연속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 ii. 최초의 적격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에 대해 60%의 투자세 공제. 이 투자세 공제를 활용하여 매과세 연도 법정 소득의 100%에 대해 상쇄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공제는 전액을 사용할 때까지 차기 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투자세 공제 신청서는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3 전략적 프로젝트에 대한 인센티브

전략적 프로젝트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제품 또는 활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략적 프로젝트는 구상 기간이 긴 막대한 자본 투자와 관련이 있으며, 기술 수준이 높고, 통합되어 있으며, 광범위한 연계를 생성시키고,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와 같은 프로젝트는 다음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 i. 10년간 법정 소득의 100%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개척자 자격, 개척자 기간 동안 발생하는 미처리 자본 공제는 회사의 개척자 후 소득에서 이월되어 공제될 수 있습니다.

개척자 기간 동안 발생한 누적 손실은 회사의 개척자 후 소득에서 7년간 연속 이월되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또는

- ii. 최초의 적격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에 대해 100%의 투자세 공제. 투자세 공제는 매과세 연도 법정 소득의 100%에 대해 상쇄될 수 있습니다. 미사용 공제는 전액을 사용할 때까지 차기 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투자세 공제 신청서는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4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 중소기업(SME)

2009 과세 연도부터 소득세 및 세제 인센티브를 부가할 목적으로 중소기업(SME)의 정의는 과세 연도의 기본 기간 시작 때 납입자본금이 RM250 이하인 말레이시아 거주자 회사로 그와 같은 회사는 납입자본금이 RM250만을 초과하는 다른 회사의 지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SME)은 최대 RM50만의 과세 소득에 대해 17%의 감면된 법인세를 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남은 과세 소득에 대한 세율은 24%로 유지됩니다.

### 소기업

현재 주주 기금이 RM50만을 초과하지 않고 말레이시아인 지분이 60% 이상인 말레이시아에 설립된 소기업은 1986년 투자촉진법(PIA)에 따라 소기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2012년 7월 3일부터 소기업은 주주 기금이 RM250만을 초과하지 않고 말레이시아인 지분이 60%에서 100%까지인 말레이시아에 설립된 회사로 정의가 바뀌었습니다.

소기업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i. 1965년 회사법에 따라 설립
- ii. 주주 기금이 RM250만을 초과하지 않고 말레이시아인 지분 소유권이 다음과 같아야 함.
  - 주주 기금이 RM50만 이하이고 말레이시아인 지분이 60% 이상인 회사.

- 주주 기금이 RM50만을 초과하고 RM250만 이하이고 말레이시아인 지분이 100%인 회사.

소기업은 다음의 인센티브를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 i. 5년 동안 법정 소득의 100%에 대해 소득세 면제가 주어지는 개척자 자격 개척자 기간 동안 발생한 미처리 자본은 이월되어 회사의 개척자 후 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개척자 기간 동안 발생한 누적 손실은 회사의 개척자 후 소득에서 7년간 연속 이월되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또는

- ii. 5년 이내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에 대해 60%의 투자세 공제. 투자세 공제는 매과세 연도 법정 소득의 100%에 대해 상쇄될 수 있습니다. 미사용 공제는 전액을 사용할 때까지 차기 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개인 유한 회사가 설립되어 기존의 생산/활동을 인수할 경우 단독 소유권 또는 파트너십 회사는 이와 같은 인센티브를 신청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 i. 주주 기금이 RM50만 이하이고 장려 활동을 벌이거나 또는 소기업 장려 목록에서(부록 III: 소기업 참조) 또는 일반 장려 목록에서(부록 I: 장려 활동 및 제품 - 일반 참조) 장려한 제품을 생산하는 소기업의 경우
- ii. 주주 자금이 RM50만을 초과하고 2RM50만 이하이며 장려 활동을 벌이거나 또는 소기업 장려 목록에서(부록 III: 소기업 참조) 또는 일반 장려 목록에서(부록 I: 장려 활동 및 제품 - 일반 참조) 장려한 제품을 생산하는 소기업의 경우
- iii. 주주 자금이 RM50만을 초과하고 RM250만 이하이며 장려 활동을 벌이거나 또는 일반 장려 목록에서(부록 I: 장려 활동 및 제품 - 일반 참조) 장려한 제품을 생산하는 소기업의 경우

투자세 공제 신청서는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5 선정된 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 1.5.1 기계류 및 장비

공작 기계, 자재 취급 장비, 로봇 및 공장 자동화 장비 그리고 공장 기계, 자재 취급 장비 및 로봇 및 공장 자동화 장비의 모듈과 구성품

## 1.5.2 특수 기계류 및 장비

특정 산업을 위한 특수 공정 기계류 또는 장비, 포장 기계류 그리고 특정 산업 및 포장 기계류를 위한 특수 공정 기계류 또는 장비를 위한 모듈과 구성품

선정된 기계류 및 장비의 생산 활동을 하는 회사는 다음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 i. 10년간 법정 소득의 100%에 대해 소득세 면제를 받는 개척자 자격. 개척자 기간 동안 발생한 미처리 자본 공제는 이월되어 회사의 개척자 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척자 기간 동안 발생한 누적 손실은 회사의 개척자 후 소득에서 7년간 연속 이월되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또는

- ii. 최초의 적격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에 대해 100%의 투자세 공제. 투자세 공제는 매과세 연도 법정 소득의 100%에 대해 상쇄될 수 있습니다. 미사용 공제는 전액을 사용할 때까지 차기 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부록 IV: 선정된 산업을 위한 장려 활동 및 제품 목록 참조).

## 1.6 자동차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에너지 효율 차량과 그 주요 구성품/시스템의 조립 및 제조를 장려하는 것은 말레이시아 자동차산업에 더욱 발전시키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투자진흥청(MIDA)은 다음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 있는 회사에 5-10년간 소득세 면제 또는 투자세 공제(ITA)의 소득세 면제와 동등한 것의 형태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 i. 에너지 효율 차량의 조립.
- ii. 변속기, 엔진, 에어백 & 그 구성품, 핸들 & 제어 메커니즘 및 브레이크 메커니즘 등과 같은 에너지 효율 차량 또는 비에너지 효율 차량을 위한 주요 구성품/시스템의 제조
- iii. 전기 모터, 전기 배터리 및 배터리 관리 시스템과 같은 하이브리드 및 전기 차량을 위한 구성품의 제조.

인센티브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투자진흥청(MIDA)이 접수한 신청에 대해 유효합니다.

## 1.7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항공우주산업 발전은 말레이시아 정부가 인정한 전략 및 하이테크 부문의 하나입니다. 여기에는 MRO(정비, 수리 & 오버홀), 시스템 통합 및 엔지니어링 & 설계 등에 직간접으로 기여하는 활동이 포함됩니다.

투자진흥청(MIDA)은 다음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 있는 회사에 5-10년간 소득세 면제 또는 투자세 공제(ITA)의 소득세 면제와 동등한 것의 형태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 i. 항공우주 제조
- ii. 시스템 통합
- iii. 정비, 수리 및 오버홀(MRO);
- iv. 항공 관련 서비스

인센티브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투자진흥청(MIDA)이 접수한 신청에 대해 유효합니다.

## 1.8 부가 가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오일 팜 바이오매스의 활용에 대한 인센티브

바이오 기반 화학 약품, 바이오 연료, 파티클보드, 중밀도 섬유보드, 합판, 펄프 및 제지와 같은 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오일 팜 바이오매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다음의 인센티브를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 i. 신규 회사

- a) 10년간 법정 소득의 100%에 대해 소득세 면제를 받는 개척자 자격. 개척자 기간 동안 발생한 미처리 자본 공제는 이월되어 회사의 개척자 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척자 기간 동안 발생한 누적 손실은 회사의 개척자 후 소득에서 7년간 연속 이월되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또는

- b) 5년 이내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에 대해 100%의 투자세 공제. 이 투자세 공제는 매과세 연도 법정 소득의 100%에 대해 상쇄될 수 있습니다. 미사용 공제는 전액을 사용할 때까지 차기 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 ii. 재투자하는 기존 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 a) 10년간 재투자에서 발생하는 증가된 법정 소득의 100%에 대해 소득세 면제를 받는 개척자 자격 개척자 기간 동안 발생한 미처리 자본 공제는 회사의 개척자 후 소득에서 이월되어 공제될 수 있습니다.

개척자 기간 동안 발생한 누적 손실은 회사의 개척자 후 소득에서 7년간 연속 이월되어 공제될 수 있습니다.

- b) 5년 이내 발생한 추가 적격 자본적 지출에 대해 100%의 투자세 공제. 이 투자세 공제는 매과세 연도 법정 소득의 100%에 대해 상쇄될 수 있습니다. 미사용 공제는 전액을 사용할 때까지 차기 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투자세 공제 신청서는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9 산업용 빌딩 시스템(IBS)에 대한 인센티브

### 기본 구성품/제품 및 시스템

기둥, 빔, 슬라브, 벽, 지붕 트러스,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시스템, 거푸집 공사 시스템, 강철 프레임 시스템, 블록워크 시스템, 목재 프레임 시스템 및 혁신적 시스템. 산업용 빌딩 시스템(IBS)의 제조 활동을 펼치고 있는 회사는 다음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 i. 5년간 법정 소득의 70% - 100% 사이의 소득세 면제.

또는

- ii. 최초의 적격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에 대해 60%의 투자세 공제와 동등한 소득세 면제. 이 소득세 면제는 과세 연도마다 법정 소득의 70% - 100%에 대해 상쇄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세 공제 신청서는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10 말레이시아인 소유 회사에 대한 1986년 투자 촉진법에 따른 세계 인센티브 취득을 희망함의 정의

1986년 투자촉진법(PIA)에 따라 회사가 세계 인센티브를 누리기 위한 주요 기준은 회사가 반드시 장려 활동을 시작하거나 참여하거나 또는 생산을 시작하지 않은 장려 제품을 생산하기를 '희망'하여야 합니다.

## i. 생산의 정의

- a) 제조 회사 - 회사가 제품을 (시험 생산을 포함하여) 생산하기 시작했음.
- b. 용역 회사 - 회사가 제공한 용역에 대해 최초의 청구서를 발행했음.

## ii. 생산 중인 회사

이미 생산 중인 말레이시아인 소유 제조 및 용역 회사는 1986년 PIA에 따라 '희망' 조항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12년 7월 3일부터 투자진흥청(MIDA)에 신청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생산을 시작한 말레이시아인 소유 회사는 세계 인센티브의 고려 대상이 될 자격이 주어집니다.

## iii. 인센티브

개척자 자격 또는 1986년 투자촉진법(PIA)에 따라 일반 세율 및 자격에 기준한 투자세 공제와 동등한 세금 면제

## 1.11 제조 부문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 i. 재투자 공제

재투자 공제(RA)는 확장, 자동화, 현대화 또는 동일 산업 내의 관련 제품으로의 다양화 등을 위한 목적으로 재투자하는 제조 활동 및 선정된 농업 활동에 종사하는 기존의 회사로 적어도 36개월 동안 운영되어 온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투자 공제(RA)는 회사의 적격 자본적 지출에 대해 60%의 비율로 주어지며, 과세 연도 동안 법정 소득의 70%에 대해 상쇄될 수 있습니다. 미사용 공제는 최대 7년의 평가 기간 동안 연속 이월할 수 있고 그 기간은 15년의 종료 직후 시작됩니다. 만약 회사가 재무부(MOF)가 정한 수준을 초과하는 생산성 수준을 확보하는 회사는 과세 연도 동안 법정 소득의 100%에 대해 재투자 공제를 상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하부 부문에 대한 지정된 생산성 수준에 관한 추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IRB)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유용한 주소 - 관련 기관 참조).

재투자 공제(RA)는 최초의 재투자가 이루어진 연도로부터 시작하여 15년 동안 연속 주어집니다. 회사는 적격 프로젝트 완료 시, 즉 건물이 완공되거나 또는 플랜트/기계류가 운전을 시작할 때까지만 재투자 공제(R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09과세 연도로부터 동일 그룹 내에서 관련 회사로부터 자산을 구입하는 회사로 그러한 자산에 대해 재투자 공제(RA)를 신청한 회사는 동일한 자산에 대해 재투자 공제(RA)를 신청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투자를 위해 취득한 자산은 2009 과세 연도로부터 시작하여 재투자 시점으로부터 5년간 처분할 수 없습니다.

조세 감면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투자할 의향이 있는 회사는 취소할 목적으로 개척자 자격 또는 개척자 인증서를 반납하고 재투자 공제(RA)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재투자 공제(RA) 신청서는 국세청(IRB)에 제출하여야 하는 한편, 재투자 공제(RA)를 받기 위한 개척자 자격 또는 개척자 인증서 반납은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ii. 가속 자본 공제(ACA)

### a) 장려 활동 또는 제품에 대한 재투자

재투자 공제(RA) 자격이 있는 15년 이후 장려 제품의 제조에 재투자하는 회사는 가속 자본 공제(ACA)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가속 자본 공제(ACA)는 자본적 지출을 3년 이내 탕감하는 특별 공제, 즉 초기 공제 40%와 연간 공제 20%를 제공합니다.

신청서는 투자진흥청(MIDA)로부터 회사 장려 활동 또는 제품을 제조하고 있음을 인증하는 서신을 동봉하여 국세청(IRB)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속 자본 공제(ACA) 신청서는 국세청(IRB)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b) 폐기물 재활용

2001 과세 연도로부터 사업 목적으로 적격 지출이 발생하기 시작한 제조회사는 다음과 같은 플랜트 및 기계에 대해 AC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폐기물 재활용 전용 또는 기타 용도로 사용된 경우, 또는
- 폐기물을 완제품으로 추가로 처리하는 데 사용

신청서는 국세청(IRB)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iii. 산업용 빌딩 시스템(IBS)에 대한 인센티브

산업용 빌딩 시스템(IBS)은 건축의 품질을 높이고,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작업 환경을 만들뿐만 아니라 외국 근로자에 대한 의존을 줄입니다. 산업용 빌딩 시스템(IBS) 구성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금형을 구매하는 데 비용이 발생한 회사는 2006 과세 연도로부터 초기 공제 40%와 연간 공제 20%의 비율로 가속 자본 공제(ACA)를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신청서는 국세청(IRB)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iv. 그룹 조세 감면

그룹 조세 감면은 1967년 소득세법에 따라 현지에서 설립된 모든 거주민 회사에 제공됩니다. 2019년부터 시작하여 그룹 조세 감면을 받을 자격이 있는 회사는 과세 연도 3년간 연속 그 조정 손실의 최대 70%까지 반납하여 동일 그룹 내의 다른 회사의 소득에 대해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청구 회사와 반납 회사 모두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a) 청구 회사와 반납 회사는 각각 기본 연도의 시작 시 RM250만을 초과하는 보통주의 납입자본금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 b) 청구 회사와 반납 회사는 모두 회계 연도가 동일하여야 합니다.
- c) 그룹의 청구 회사와 반납 회사의 직간접 주식 지분이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 d) 70% 주식 지분은 전 연도와 관련 연도 동안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e) 재산권 또는 외국인 소유 회사의 취득으로 인한 손실은 그룹 조세 감면의 목적으로 무시되어야 합니다.
- f) 현재 다음의 인센티브를 누리고 있는 회사는 그룹 조세 감면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 개척자 자격
  - 투자세 공제/투자 공제
  - 재투자 공제
  - 운송 이윤의 조세 감면
  - 1967년 소득세법의 127 절에 따른 소득세 감면

신청서는 국세청(IRB)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v. 자동화 자본 공제(Automation CA)

말레이시아에서 최소한 36개월 이상 운영된 (노동 및 비노동 집약 산업) 제조 회사는 다음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범주 1: 고노동 집약 산업(고무 제품, 목재, 플라스틱, 가구 및 섬유)

- i. 2015년에서 2020년 사이의 과세 연도 5년 이내에 발생한 최초의 지출 RM4백만에 대한 200%의 자동화 자본 공제

범주 2: 기타 산업

- ii. 200%의 자동화 자본 공제는 2015년부터 2020년 사이의 과세 연도 5년 이내에 발생한 최초의 RM2백만에 대해 제공됩니다.

투자세 공제 신청서는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농업 부문에 대한 인센티브

1986년 투자촉진법에서는 농업 관련 “회사”라는 용어에는 다 음이 포함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 농업 기반 협동 조합 및 협회. 그리고
-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단독 사업체 및 파트너십.

농업 부문에서 장려 제품을 생산하거나 또는 장려 활동에 종 사하고 있는 회사(부록 I: 장려 활동 및 제품 목록 - 일반과 부 록 III: 소기업 회사 참조)는 다음의 인센티브를 받을 자격이 주 어집니다.

### 2.1 농업 부문에 대한 주요 인센티브

#### i. 개척자 자격(Pioneer Status)

제조 부문에서와 같이, 장려 제품을 생산하거나 또는 장려 활동 에 종사하고 있는 회사는 개척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개척자 자격을 갖고 있는 회사는 소득세의 일부를 감면받습니 다. 그와 같은 회사는 (농업 생산물의 최초 판매 일자로 정의 되는) 생산일로부터 시작하여 5년간 법정 소득의 30%에 대 해 세금을 납부합니다.

개척자 기간 동안 발생한 미처리 자본 공제는 이월되어 회사 의 개척자 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척자 기간 동안 발생한 누적 손실은 회사의 개척자 후 소득 에서 7년간 연속 이월되어 공제될 수 있습니다.

투자세 공제 신청서는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ii. 투자세 공제(Investment Tax Allowance)

개척자 자격에 대한 대안으로, 장려 제품을 생산하거나 장려 활동에 종사하는 회사는 ITA (투자세 공제)를 신청할 수 있 습니다. ITA를 부여받은 회사는 최초의 적격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에 대해 60%의 공제를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회사는 매과세 연도 법정 소득의 70%에 해 이 공제를 상쇄 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공제는 전액을 사용할 때까지 차기 연 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법정 소득의 나머지 30 %는 일반 회사 세율로 과세됩니다.

투자세 공제 신청서는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 니다.

## 2.2 식품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

### 새로운 제품에 대한 인센티브

농장 레벨뿐만 아니라 생산/처리 레벨에서 식품 프로젝트에 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특정의 인센티브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식품 가공 부문의 원자재 공급이 늘어나 그와 같은 원자재의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듭니다.

승인된 식품 생산 프로젝트에 종사하는 자회사에 투자하는 회 사와 식품 생산 활동을 수행하는 자회사 모두에 세계 인센티브 가 주어집니다. 주어지는 세계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품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자회사에 투자하는 회사는 해당 과세 연도에 해당 자회사에 투자한 금액과 동등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식품 생산 활동을 수행하는 자회사는 신규 프로젝트에 대해 10년간의 평가 기간 또는 확장 프로젝트에 대해 5 년간의 평가 기간 동안 법정 소득에 대해 일체의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농업부가 접 수한 신청.

### 2.3 할랄(Halal) 제품에 대한 인센티브

#### i. 할랄(Halal) 식품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

할랄(halal) 식품 생산에의 신규 투자를 장려하고 국제 기준을 준수하는 고품질 할랄(halal) 식품 생산에 현대의 최첨단 기계 류 및 장비 사용을 늘리기 위해 할랄(halal) 식품 생산에 투자 하고 MS 1500:2004를 준수하여 이슬람교개발국(JAKIM)으 로부터 할랄 인증을 이미 취득한 회사는 5년 이내 발생한 적 격 자본적 지출의 100%의 투자세 공제를 받을 자격이 주어 집니다.

그러한 투자세 공제는 과세 연도 법정 소득의 100%에 대해 비용으로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공제는 전액을 사 용할 때까지 차기 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교개발국(JAKIM)으로부터 할랄(halal) 인증을 취득하 는 것과 관련한 추가 정보를 얻으려면 [www.halal.gov.my](http://www.halal.gov.my)를 방문해 보십시오.

신청서는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ii. 기타 할랄(Halal)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 a) 할랄 파크 운영자에 대한 인센티브

할랄 파크의 매력을 홍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할랄 파크 운영자는 다음의 인센티브를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 i) 10년간 법정 소득의 100%에 대해 소득세 면제를 받는 개척자 자격. 개척자 기간 동안 발생한 미처리 자본 공제는 이월되어 회사의 개척자 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척자 기간 동안 발생한 누적 손실은 회사의 개척자 후 소득에서 7년간 연속 이월되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또는

- ii) 5년 이내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에 대해 100%의 투자세 공제. 이 투자세 공제는 매과세 연도 법정 소득의 100%에 대해 상쇄될 수 있습니다. 미사용 공제는 전액을 사용할 때까지 차기 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 b) 할랄(Halal) 산업 운영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정된 할랄 파크에서 프로젝트 착수를 제안하는 회사는 다음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 i) 10년 이내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에 대해 100%의 투자세 공제. 투자세 공제는 매과세 연도 법정 소득의 100%에 대해 상쇄될 수 있습니다. 미사용 투자세 공제는 전액을 사용할 때까지 차기 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또는
- ii) 할랄 장려 제품의 개발 및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에 대해 수입 관세 및 영업세 면제.
- iii) HACCP, GMP, Codex Alimentarius(FAO & WHO의 식품 표준 지침), 위생 표준 운영 절차와 농장 돼지 고기의 식품 추적가능성과 같은 수출 시장 준수 규정 등과 같은 국제 품질 표준을 획득하는 데 발생한 비용에 대한 이중 공제.

### c) 할랄 물류 운영자에 대한 인센티브

말레이시아에 할랄 산업과 할랄 공급 체인을 장려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할랄 물류 운영자에게는 다음의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 i) 5년간 법정 소득의 100%에 대한 소득세 면제 개척자 기간 동안 발생한 미처리 자본 공제는 이월되어 회사의 개척자 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척자 기간 동안 발생한 누적 손실은 회사의 개척자 후 소득에서 7년간 연속 이월되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또는

- ii) 5년 이내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에 대해 100%의 투자세 공제. 이 투자세 공제는 매과세 연도 법정 소득의 100%에 대해 상쇄될 수 있습니다. 미사용 공제는 전액을 사용할 때까지 차기 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할랄산업개발협회(HDC)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가 정보를 얻으려면 [www.hdcglobal.com](http://www.hdcglobal.com)을 방문하십시오.

## 2.4 농업 부문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 i. 재투자 공제

쌀, 옥수수, 야채, 덩이줄기, 가축, 수산물 등과 같은 필수 식품의 생산과 재무부 승인 활동에 36개월 이상 종사하는 회사는 재투자 공제(RA) 자격이 주어집니다.

RA는 최초의 재투자가 이루어진 연도부터 시작하여 15년간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의 60%의 공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재투자 공제는 과세 연도 법정 소득의 70%에 대해 상쇄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공제는 최대 7년의 평가 기간 동안 연속 이월할 수 있고 그 기간은 15년의 종료 직후 시작됩니다.

신청서는 국세청(IRB)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ii. 자원 기반 산업 재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이 인센티브는 51% 이상이 말레이시아인 소유로 수출 잠재력이 있는 고무, 오일 팜 및 목재 기반 산업에 종사하는 회사에 제공됩니다. 확장 목적으로 재투자하는 이들 산업에 종사하는 회사는 다음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 a) 5년간 법정 소득의 70%에 대해 소득세 면제가 주어지는 개척자 자격 개척자 기간 동안 발생한 미처리 자본 공제는 이월되어 회사의 개척자 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척자 기간 동안 발생한 누적 손실은 회사의 개척자 후 소득에서 7년간 연속 이월되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또는

- b) 5년 이내 발생한 추가 적격 자본적 지출에 대해 60%의 투자세 공제. 이 투자세 공제는 매과세 연도 법정 소득의 70%에 대해 상쇄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공제는 전액을 사용할 때까지 차기 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부록 V: 장려 활동 및 제품 목록 - 재투자)

투자세 공제 신청서는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iii. 식품 가공 활동 재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장려 식품 가공 활동에 재투자하는 말레이시아인 지분이 60% 이상인 현지인 소유의 제조 회사

- a) 5년간 법정 소득의 70%에 대해 소득세 면제가 주어지는 개척자 자격 개척자 기간 동안 발생한 미처리 자본 공제는 이월되어 회사의 개척자 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척자 기간 동안 발생한 누적 손실은 이월되어 회사의 개척자 후 소득에서 7년간 연속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 b) 5년 이내 발생한 추가 적격 자본적 지출에 대해 60%의 투자세 공제. 이 투자세 공제는 매과세 연도 법정 소득의 70%에 대해 상쇄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공제는 전액을 사용할 때까지 차기 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부록 V: 장려 활동 및 제품 목록 - 재투자)

### iv. 가속 자본 공제(ACA)

재투자 공제(RA)가 만료하자마자 장려 농업 활동 및 식품 제품에 재투자하는 회사는 ACA(가속 자본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에는 쌀, 옥수수, 채소, 덩이줄기, 가축, 수산물 재배와 재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타 활동이 포함됩니다.

ACA(가속 자본 공제)는 2년 이내 자본적 지출을 탕감할 수 있는, 즉 첫째 초기 공제 20%와 연간 공제 40%를 받을 수 있는 특별 공제를 제공합니다.

청구서는 회사가 장려 농업 활동을 수행하거나 또는 장려 식품을 생산하고 있음을 인증하는 투자진흥청(MIDA)의 서신과 함께 국세청(IRB)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v. 농업 공제

농업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회사는 특정 자본적 지출에 대해 1967년 소득세법에 따라 자본 수당(CA) 및 특수 산업용 건물 공제(IBA)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국세청(IRB)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vi. 승인된 농업 프로젝트의 자본적 지출에 대한 100% 공제

1967년 소득세법 부속서 4A에서는 재무부 장관의 승인에 따라 승인된 농업 프로젝트의 자본적 지출은 100%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재무부 장관이 규정한 특정 최소 면적을 경작하고 활용하는 농장에 대해 특정 기간 내에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승인된 농업 프로젝트는 야채, 과일(파파야, 바나나, 패션 프루트, 스타 프루트, 구아바 및 망고스틴), 과일류, 근채류, 허브, 향신용 작물, 동물 사료용 작물 및 수경 재배 작물의 경작, 관상어 양식, 어류와 참새우 양식(지수식 양식, 육상수조 양식, 수중 가두리 양식과 해면 가두리 양식), 새조개류, 굴, 홍합과 해초류 양식, 새우, 참새우 및 어류의 부화, 그리고 특정 종의 산림 플랜테이션 등을 말합니다.

이 인센티브에 따라 위의 승인된 농업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개인은 다른 수입원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포함하여 자신의 종합 소득 금액에서 당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을 공제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누적 소득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미처리 지출은 차후 평가 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선택할 경우에는 동일한 자본적 지출에 대해 자본 공제 또는 농업 공제를 받을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인센티브는 1986년 투자촉진법에 따라 인센티브를 승인 받고 세금 감면 기간이 시작되거나 만료되지 않은 회사에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신청서는 국세청(IRB)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생명공학기술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 3.1 생명공학기술산업에 대한 주요 인센티브

생명공학기술 활동을 수행하고 말레이시아 바이오경제개발 공사(바이오경제공사)로부터 바이오넥서스 자격(BioNexus Status\*)을 승인받은 회사는 다음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 i. IP 소득의 경우, 법정 소득의 최대 100%까지의 세금 면제
  - a) 첫째 연도로부터 10년간 연속 회사가 신규 사업으로 거두어들인 법정 소득. 또는
  - b) 첫째 연도로부터 5년간 연속 회사가 기존 사업 및 확장 프로젝트로부터 거두어들인 법정 소득.
- ii. 비 IP 소득의 경우, 법정 소득의 최대 70%까지의 세금 면제\*\*.
  - a) 첫째 연도로부터 10년간 연속 회사가 신규 사업으로 거두어들인 법정 소득. 또는
  - b) 첫째 연도로부터 5년의 평가 기간 동안 연속 회사가 기존 사업 및 확장 프로젝트로부터 거두어들인 법정 소득.
- iii. 5년 동안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의 100% 공제에 상당하는 신규 사업 또는 확장 프로젝트로부터 거두어들인 법정 소득의 100% 세금 면제\*\*.
- iv. 세금 면제 기간이 만료된 후 10년간 적격 활동으로부터 거두어들인 법정 소득에 대해 20%의 할인 세율.
- v. 원자재/구성품/기계류/장비에 대한 수입 관세 및 영업세 면제.
- vi. R&D를 위해 발생한 지출에 대해 이중 공제.
- vii. 수출 장려를 위해 발생한 지출에 대해 이중 공제
- viii. 생명공학기술 활동 목적으로만 사용된 적격 건물은 10년간 IBA(산업용 건물 공제)를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 ix. 바이오넥서스 자격(BioNexus Status) 회사에 투자하는 회사 또는 (사업 소득원이 있는) 개인은 사업화 단계의 초기에 투자한 총투자액에 상당하는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 바이오넥서스 자격(BioNexus Status) 신청서는 바이오경제공사(Bioeconomy Corporation)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19년 4월 22일자로 재무부의 최종 확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정보

#### 3.2 바이오넥서스 자격(BioNexus Status) 회사에 대한 생명공학기술 자금 조달

바이오경제공사(Bioeconomy Corporation)는 생명공학기술 사업화자금(BCF) 2.0 프로그램에 따라 바이오넥서스 자격(BioNexus Status) 회사에 자금 조달을 제공합니다. BCF 시설의 목표는 생명공학기술 제품 및 서비스의 지속적인 상용화를 촉진하고 신청자의 기존 생명공학기술 사업 확장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BCF 프로그램에 따라 본질적으로 2개의 다양한 융자 제도가 있습니다. 즉, 자금 조달 시설 용어인 바이오경제개발계획("BDS") 그리고 신청자의 운전 자금 조달 요건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비즈니스지속계획("BSS")가 그것입니다.

바이오경제개발계획(BDS)은 (제로 입력 자금 조달 비용을 제외하고) 신청자당 최대 RM270만 한도 내의 자금 조달 계획으로 다음의 지출이 포함됩니다.

- a) 사업 운영 목적으로 건물 또는 토지 건설을 위한 기성품 건물/토지의 구매.
- b) 신규/중고 기계류 및 장비, 실험실 또는 기타 생산 장비의 구매.
- c) 급여/인적 자본 이득 비용을 제외한 운영 지출. 그리고
- d) 투자진흥청(MIDA)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타 운영 지출 비용.

바이오경제개발계획(BDS)에 따른 융자의 마진은 다음과 같이 다양합니다.

- a) 사업 운영 목적으로 건물 또는 토지 건설을 위한 기성품 건물/토지 구매에 대해 최대 90%까지 융자.
- b) 새로운 기계류 및 장비, 실험실 또는 기타 생산 장비의 구매에 대해 최대 90%까지 융자.
- c) 중고 기계류 및 장비, 실험실 또는 기타 생산 장비의 구매에 대해 최대 65%까지 융자. 그리고/또는
- d) 운영 지출에 대해 최대 90%까지 그리고 시설액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융자.

이들 모두에 대해 융자 마진은 투자진흥청(MIDA)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비즈니스지속계획(BSS)은 다음의 형식 중 하나에서 성공적인 신청자에게 제공되는 최대 RM60만의 융자 제도입니다.

a) 구매 회전 신용장/판매 회전 신용장

지출할 수도 있고, 전체를 상환할 수도 있으며, 주기가 되풀이하여 실행될 수도 있는 유연성 있는 용자 제도. 이 용자 제도는 용자 한도까지 여러 트랑췌(tranche)에서 선급금 기준으로 지출할 수 있고 또한 그 선급금을 상환했을 경우 재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용자 제도는 매년 갱신할 수 있고 또한 적용되는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b) 기간 운전 자금 용자

적용할 수 있는 조건에 따라 특정 기간에 걸쳐 정기 상환 일정이 있는 용자 제도.

c) 팩토링

적용할 수 있는 조건에 따라 받을어음을 할인 판매하여 얻은 자금 조달.

비즈니스지속계획(BSS)에 따라 허용 가능한 전형적인 지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a) 원자재, 소비자/축산물.
- b) 급여/인적 자본 이득 비용을 제외하고 기존 제품/서비스 개선을 위한 R&D 활동과 직접 관련된 비용.
- c) 급여/인적 자본 제도 비용을 제외하고, 광고, 해외 전시회 참가, 즉 부스 개설, 비행기 표 등과 같은 글로벌 시장에 제품/서비스를 소개하기 위한 사업 확장 활동과 직접 관련된 비용.
- d) 특정 R&D/국제 비즈니스 개발 단계와 직접 관련된 간접비
- e) 지식 재산권(IP) 신고 및 등록.
- f) 임상/현장 시험 비용.
- g) 법 준수 및 규제 비용.
- h) 지식 근로자 모집 초기 비용.
- i) 전문가/기술 컨설팅 수수료.
- j) 급여/인적 자본 소득 비용을 제외하고 본질적으로 운전 자금인 비용. 그리고
- k) 말레이시아 산업개발금융공사(MIDF)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타 운전 자본 비용.

제공되는 비즈니스지속계획(BSS)에 대한 용자의 마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 a) 구매 회전 신용장에 대해 최대 100%까지의 용자.
- b) 판매 회전 신용장에 대해 최대 90%까지의 용자.
- c) 기간 운전 자금 용자에 대해 최대 90%까지의 용자. 또는
- d) 팩토링에 대해 최대 80%까지의 용자.

위에서 언급된 BCF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 기준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a) 신청자는 바이오넥서스 자격(BioNexus Status) 회사여야 합니다.
- b) 말레이시아의 소유 지분이 과반수, 즉 지분의 51% 이상을 말레이시아인이 소유, 그리고
- c) 최소 납입자본금이 RM25만

추가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www.bioeconomycorporation.my](http://www.bioeconomycorporation.my) 를 방문하십시오.

## 4. 환경 관리에 대한 인센티브

### 4.1 조림 프로젝트에 대한 인센티브

산림 재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회사는 1986년 투자촉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 i. 10년간 법정 소득의 100% 소득세 면제가 되는 개척자 자격 개척자 자격 기간 동안 발생한 미처리 자본 공제는 회사의 개척자 후 소득에서 이월되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또는
- ii. 5년 이내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에 대해 100%의 투자세 공제(ITA). 이 투자세 공제는 매과세 연도 법정 소득의 100%에 대해 상쇄될 수 있습니다. 미사용 공제는 전액을 사용할 때까지 차기 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 4.2 폐기물 재생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부가가치가 높고 하이테크를 사용하는 폐기물 재활용 활동을 수행하는 회사는 개척자 자격 또는 투자세 공제(ITA)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농업 폐기물 또는 농업 부산물 재활용, 화학 물질 재활용 및 재구성된 목재 기반 패널보드 또는 제품의 생산을 포함하여 이러한 활동에는 다음의 자격이 주어집니다.